



제429 회국회(정기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종아동찾기 운동 실시 등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72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8. 8.
- (3) 회 부 일 : 2025. 8.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5(실종아동찾기 운동) ①</u>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찾기 운동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주요 검토사항

- 국가적으로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적 수사와 CCTV 등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020년 19,146건에서 2024년 25,692건으로 증가한 상황이고, 1년 이상 연락이 안되는 장기실종 아동 등도 2024년 12월 말 기준 1,400명이 넘는 실정임.

<실종아동 등 발생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아동	인구수	7,928,907	7,710,946	7,483,944	7,271,460	7,077,206
	신고접수	19,146	21,379	26,416	25,628	25,692
	미발견	4	5	58	8	14
지적장애인 등 (연령불문)	인구수	344,594	351,435	359,421	367,735	376,721
	신고접수	7,078	7,166	8,344	8,440	8,430
	미발견	6	7	29	42	41
치매환자 (연령불문)	인구수	612,724	629,142	671,844	707,341	750,667
	신고접수	12,272	12,577	14,527	14,677	15,502
	미발견	3	9	12	23	16

* 자료 : 경찰청

* (접수) 해당년도 기준, (미발견) 현시점 기준/ 미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실종 기간별 현황>

(2024. 12월 말 기준)

구분	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년 이상
아동	1,187	64	22	11	35	1,055
지적장애인	223	41	26	18	61	77
치매환자	129	16	30	15	50	18
계	1,539	121	78	44	146	1,150

* 자료 : 경찰청

- 실종아동 관련 정책은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실종자의 수색·발견을 위한 실종경보문자 운영, 실종예방 사전등록, 장기실종아동 가족 동반 합동수색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 관리 및 정책 지원, 예방교육·홍보, 가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실종아동 관련 정책>

- 경찰청 : 실종자 수색·발견 ○ (실종경보문자 운영)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발생지 인근의 핸드폰에 재난문자 형태로 실종아동등 경보문자 송출('21. 6월~) ※ 관련 예산 : 실종경보 문자 송출 시스템 운영 ('24) 115 → ('25) 375백만원 (경찰청 경보문자송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5년에는 문자 발송 확대를 대비한 공공요금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개발 예산 260백만원 증액) ○ (실종예방 사전등록) 아동등 실종을 대비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정보 등록, 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12. 7월~) ※ 관련 예산 : 사전등록제 시스템 운영 및 홍보 ('24) 44 → ('25) 865백만원 (사전등록제도 홍보 및 운영비용으로, '25년에는 대국민 사전등록앱 안전Dream의 지문추출기능 고도화 등 개발예산 821백만원 증액)	-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사업(아동권리보장원 수행, 예산 876백만원) ○ (정보관리 및 정책 지원) 보호시설·정신의료기관의 보호자가 확인되지않은 아동등의 신상카드 DB구축·관리, 유전자검사제도 지원, 연구·조사 등 수행 ○ (예방교육·홍보) 실종예방 교육·홍보콘텐츠 제작·배포, 홍보협력기관 발굴 및 관리,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실시 ○ (가족지원) ①실종아동 찾기 물품·활동비 지원, 실종아동 포스터(얼굴나이변환 사진 지원) 제작·배포 등 ② 장기실종가족 의료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상봉가족 사후관리(심리상담 서비스 등) 등 지원
--	--

○ (장기실종아동 가족 동반 합동수색) 실종아동법 제10조(출입·조사)에 근거, 경찰·관계기관*·실종자 가족이 합동으로 보호시설 및 인권취약장소를 방문, 점검하여 장기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제도('05년 최초 시행) * 보건복지부는 "실종자가족지원 사업"으로 합동수색 참여 등 실종자가족이 찾기 활동을 하는 경우 「찾기 활동비(여비, 숙박비, 일비)」와 「찾기 물품(현수막, 전단지 등)」을 지원	
---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보건복지부 및 공공·민간기관등은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실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민관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실시 개요>

○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공모지원(보건복지부)		
• (내용)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사업공모를 통한 지원사업 • (사업실적) 실종아동찾기협회 선정(3천만원), 실종아동 찾기 동영상 제작·배포		
○ 무료 협력 홍보기관 운영 관리(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내용) 기업·기관 등이 사회공헌 또는 마케팅에 실종아동등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매체의 적합성과 홍보효과 등을 검토하여 실종아동등 정보의 홍보 및 확산에 활용 • (사업실적) '24년말 기준 192개소('24 신규 승인 17개소)		
홍보기관	홍보방법	건/회
BGF 리테일	CU편의점 POS기에 실종아동 정보 송출(매월 3인)	36명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 QR코드를 통한 실종아동등 정보 홍보	연중
코레일유통	샐러드 포장지 및 POS기에 실종아동 정보 홍보	연중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화면에 실종아동정보 홍보	연중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로 고지서에 실종아동정보 홍보	연중

○ '24년 언론홍보 및 주요 홍보

홍보기관	홍보방법	건/회
파이낸셜 뉴스	실종가족 인터뷰 및 실종아동정보 기사보도	34건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등 인식증진을 위한 렌티큘러 포스터	'24.5~6.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찾기 지하철포스터 홍보	'24.11~12.
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 검사제도 온·오프라인(서울 고속터미널 및 유튜브) 홍보	'24.12.
아동권리보장원	제18회 그린리본마라톤 공동주최	'24.9.
경찰청/인생네컷	장기실종아동의 사진과 현재 추정사진을 인생네컷으로 출력, 사회적 관심 유도	2주

* 자료 : 보건복지부, 경찰청

□ 개정안은 ‘실종아동찾기 운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서도 정부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사례가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다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실종아동찾기 운동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추진 방법이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의 실종아동찾기 운동 실시 근거 및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게 되므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운동의

방법,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사 입법례¹⁾에서도 국민적 운동 추진기관 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위임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운동의 방법,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을 법령으로 한정할 경우 상황·여건 변화에 따른 운동 범위 확대 등 필요 시 탄력적 대응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경찰청 및 기획재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원활한 발견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종아동찾기 운동의 일관성 있는 추진,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지원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